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손명수 · 이연희 · 황명선
민홍철 · 박홍배 · 김용만
김형연 · 한민수 · 문정복
염태영 · 강준현 · 이정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,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,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,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, 국내대리인의 지정·변경·지정

종료 사실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,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.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및 제75조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포 명령의 이행

⑥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국내대리인의 지정·변경 또는 지정 종료의 사실
2.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
3. 국내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

⑦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화번호 또는 전자

우편 주소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.

⑨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지정, 제6항에 따른 신고, 제7항에 따른 공개 및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·변경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31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9의3. 제3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2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,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리하는 자(이하 “국내대리인”이 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 치 명령 및 제66조제2항에 따 른 공표명령의 이행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. 1. 국내대리인의 지정 · 변경 또 는 지정 종료의 사실 2.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75조(과태료) ① . ② (생략)	<u>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</u> <u>3. 국내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</u> <u>⑦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⑧ 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.</u> <u>⑨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지정, 제6항에 따른 신고, 제7항에 따른 공개 및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·변경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75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9의2. (생략)

<신 설>

10. ~ 12. (생략)

⑤ (생략)

③ _____

_____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31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④ _____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
9의3. 제31조의2제6항을 위반하
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신고한 자
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